

2018 美 무역장벽보고서에 제기된 우리나라 ICT 분야 무역장벽

정연희*

1. 개요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30일에 2018 국별 무역장벽보고서(2018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이하 '무역장벽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무역장벽보고서는 매년 3월 말에 연례보고서 형태로 발간되고 있으며, 미국이 수출을 함에 있어서 무역 및 투자 장벽이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무역장벽보고서 발간은 일반인 및 기업, 협회 등이 연방규칙제정포털(Federal eRulemaking Portal)을 통해 제출한 전자 서면 또는 우편으로 제출한 의견, 미국 상공회의소 의견 등을 토대로 하고 있다. 또한 동 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은 트럼프 美대통령의 미국 수출자의 시장 접근 기회 보장을 위한 '2018 무역정책 어젠다'¹⁾의 주요 핵심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금년(2018년도) 무역장벽보고서는 미국의 주요 무역대상국을 중심으로 64개 국가(관세영역 및 지역연합 포함)와 미국이 체결한 20여개의 자유무역협정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²⁾ 관련해서는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주요 쟁점이 되었던 자동차 안전기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ICT통상센터 연구원, (043)531-4472, yhjung@kisdi.re.kr
1) USTR이 매년 3월 초에 발간하는 보고서로 통상정책 의제, WTO 및 지역무역협정 등 무역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음.

원산지 검증 절차, 글로벌 신약 약제 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미국의 혁신과 성장 및 경쟁우위의 중요 요소로 여기는 디지털무역(Digital Trade)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하는 국경간 정보 이전(Cross Border Transfer of Data) 제약, 설비 현지화(Facilities Localization) 등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 요건에 대한 내용도 기술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이 ICT 분야 우리나라의 무역장벽으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2018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상 우리나라 ICT 분야 무역장벽 주요내용

2018 무역장벽보고서에서 미국이 우리나라 ICT 분야 무역장벽이라고 기술하고 있는 분야는 크게 TBT(무역상 기술장벽), 정부조달, 서비스무역, 투자, 디지털무역 등 5가지이다. 이러한 5가지 분류는 <표 1>과 같이 세분류로 나뉜다. 구체적인 내용은 최근 4년간의 무역장벽보고서에서 다른 내용과 대동소이하다³⁾.

2) 최근 5년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다룬 분량은 2014년에는 10페이지, 2015-2018년에는 각각 13-14페이지 정도임. 2018년 기술된 분량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아르헨티나, 브라질, 일본, 태국, 베트남과 비슷한 수준임. 단일 국가 중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는 20여 페이지 정도로 분량이 많은 편에 속하며, 우리나라는 그 다음 수준임. EU는 50여 페이지 정도로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함.

3)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비교적 최근인 4년간의 무역장벽보고서 내용과 올해의 보고서 내용을 비교해 보았으나 약간의 표현이나 분류 제목을 달리하고 있을 뿐 내용상 변화는 거의 없었음.

〈표 1〉 2018 미국 무역장벽보고서에 나타난 우리나라 ICT 분야 무역장벽

분류	세분류
TBT(무역상 기술장벽)	- IT장비 사이버보안 검증 요건
정부조달	- 공공조달 ICT장비 암호화 및 보안 요건
서비스무역	- 방송쿼터 제한 -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의 더빙 및 국내광고 제한 - 해외 위성서비스 공급 제약
투자	- 방송 및 통신서비스 외국인투자 제한
디지털무역	〈데이터 현지화〉 - 국경간 정보 이전 제약 - 설비 현지화 요건

자료: 무역장벽보고서 내용 토대로 저자 정리

(1) TBT - IT장비 사이버보안 검증 요건

무역장벽보고서는 2014년 10월 1일 시행된 네트워크 인증제도(Network Verification Scheme)의 IT장비 사이버보안 검증 요건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라우터, 스위치 등 정부기관이 조달하는 IT장비에 부과되는 요건으로, 국정원에 해당 IT장비를 제출하여 필수 검증을 받아야 한다. 미국은 한국이 CCRA⁴⁾ 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자체적으로 이러한 추가적인 필수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CCRA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도 이러한 추가적인 검증요건을 부과하고 있는데 대해 수년간 문제 제기를 해오고 있다. 이는 2014년부터 2018년 보고서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는 사안이다.

(2) 정부조달 - 공공조달 ICT장비 암호화 및 보안 요건

무역장벽보고서는 국제 CCRA 인증을 받은 공공조달용 ICT장비의 경우에도 한국 정부기관인 국정원에서 추가적인 인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금년 보고서에서

4) CCRA(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는 국제상호인정협정을 말하며 정보보호제품의 안정성 평가결과를 회원국 간에 상호인정하여 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협정임.

도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요건의 적용대상을 학교, 지방정부, 도서관, 박물관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안제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IP-PBX 등 인터넷 전화장비도 추가 검증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TBT 분야에서도 기술된 내용으로 정부조달 분야 무역장벽으로도 지적하였다.

무역장벽보고서는 또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한국은 데이터 국내저장(data residency) 요건과, 교육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용 네트워크를 일반용 네트워크와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는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요건들이 비록 권고사항이라고 할지라도 해외사업자의 시장접근 기회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게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동 보고서는 국정원의 공공조달용 네트워크 장비 암호 모듈 요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널리 통용되고 있는 국제표준인 AES도 있는데도 ARIA 및 SEED 등 우리나라 암호 알고리즘 사용분에 대해서만 국정원 인증을 받을 수 있어 미국 사업자들은 한국 내 시장에서 가상사설망(VPN) 및 방화벽시스템(firewall systems)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3) 서비스무역 장벽

1) 방송쿼터 제한

우리나라의 외국방송 프로그램 쿼터 제한 내용은 금년도 보고서에도 기술되어 있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내용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표 2>와 같다. 그리고 한-미 FTA를 통해 우리나라가 미국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기존에 설정한 쿼터를 확대하지 않도록 한 사항과, 온라인 비디오 및 음악 스트리밍 등 신규 플랫폼은 쿼터 제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사항도 지속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표 2〉 2018 미국 무역장벽보고서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외국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쿼터 제한

구분	분야	내용
총량 제한	지상파 및 라디오 방송	반기별 20%
	케이블 및 위성 방송	반기별 50%
분야별 제한	영화	(지상파) 연간 75%, (케이블 및 위성) 연간 80%
	애니메이션	(지상파) 연간 55%, (케이블 및 위성) 연간 70%
	음악	연간 40%
수입물 중 1개국 쿼터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분기별 80%

자료: 무역장벽보고서 내용 토대로 저자 정리

2)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의 더빙 및 국내광고⁵⁾ 제한

무역장벽보고서는 우리나라 방송법이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의 더빙 및 국내광고 (local advertising) 제한을 하고 있어, 이러한 조치가 한국 시장 내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의 가치 감소에 대한 미국 이해관계자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3) 해외 위성서비스 공급 제약

무역장벽보고서에 따르면 통신 분야 해외 위성서비스 공급사업자가 전송 용량 등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에 한국에 설립된 기업을 통하지 않고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서비스무역 장벽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현지 주재 설립 요건 부과는 비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 내에서 한국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와의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금년 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5) 지역광고라고도 함.

(4) 투자 장벽

무역장벽보고서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케이블 및 위성방송 서비스 외국인 지분 제한(49%)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3월 15일부터 미국 투자자는 케이블 및 위성 채널 소유가 가능해졌지만, 외국 위성 재전송(재송신) 채널은 전체 운영 채널수의 20% 제한을 두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투자 장벽으로 언급하고 있다.

(5) 디지털무역 장벽 - 데이터 현지화

1) 국경간 정보 이전 제약

USTR은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위치기반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제한하고 있어 교통정보 및 네비게이션 서비스와 같은 기능이 결합된 인터랙티브 혁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외국사업자에게 불리한 경쟁조건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사업자는 현지에 데이터처리센터를 두지 않고 있어 위치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을 받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사업자의 경우 데이터처리센터가 우리나라 현지에 존재하고 있어서 외국사업자와는 달리 위치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 측량 및 위치기반 데이터의 국외반출을 승인한 적이 없으며, 한국은 국외반출 승인 검토를 함에 있어서 안보 문제를 이유로 한국의 위성 이미지를 흐리게 처리하여 글로벌 지도 사이트에 올리는 기업의 노력 내지는 의지 또한 연계하여 고려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또한 USTR은 대부분의 이미지가 한국 밖에서 생산 및 유통된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우리나라가 제안한 고해상도 상업 위성 이미지의 가용성이 실효성을 가질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였다. 미국은 한국의 안보 상황의 민감성을 인정은 하지만, 동 사안은 별개의 이슈라고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 당국과 외국사업자의 한국 내 시장 참여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장벽보고서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상 서비스 공급자가 고객의 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목적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제3자, 보유 기간 등 정보이전 관련한 광범위한 정보 제공의무를 부과하는 동 규정은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작업이 직접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에게 디지털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동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2016년 4월 개정된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통신 및 온라인 서비스 공급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에 매출액의 최대 3%에 이르는 높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외정보 저장 및 처리 작업에 많이 의존하는 해외사업자에게는 차별적인 사항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2) 설비 현지화 요건

무역장벽보고서는 우리나라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고시 규정에 따라 네트워크 물리적 분리 요건, 특정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요건을 부과하고 있고, 이러한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주를 너무 광범위하게 분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요건 위반에 대한 벌칙이 있는 것이 아닌 권고사항이라고는 하지만, USTR은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이러한 요건을 기꺼이 충족할 우리나라 사업자에 비해 미국사업자는 시장접근 기회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무역장벽보고서는 결제대행(payment gateway)서비스 관련 설비 현지화 요건이 설비가 국외에 위치한 사업자의 투자를 활용하는 것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결제정보를 한국 내에 위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제약사항은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기 보다는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의 기

술 및 서비스 진화와 상충된다고 지적하였다.

3. 결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USTR은 최근 5년간 무역장벽보고서에 우리나라 ICT 분야 무역장벽으로, IT장비 검증 요건, 공공조달용 ICT장비 암호화 및 보안 요건, 방송쿼터 제한,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 제한, 해외 위성서비스 공급 제약, 방송 및 통신 서비스 외국인투자 제한, 데이터 현지화 요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다. 최근 완료된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ICT 분야는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미국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우리나라 ICT 분야 무역장벽으로 지적한 내용 대부분은 미국의 시각에서 볼 때 무역장벽으로 여겨지는 사항을 기술하고 있으며, 한-미 FTA에서 우리의 권한을 확보하고 있는 사안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국제통상법 위반 소지는 없지만, 최근 4년간(2014~2017년)의 무역장벽보고서와 유사하게 2018년 보고서에서도 계속 등장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통상 규범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ICT 분야 정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무역장벽보고서에서 디지털무역 장벽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NAFTA⁶⁾ 재협상 목표에도 디지털무역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디지털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CPTPP⁷⁾ 참여 의사를 확정 짓고 있지는 못하지만 재가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 현재는 잠정 중단되었지만 미국, 일본, EU 등 주요 23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다자간서비스무역협정인 TiSA⁸⁾의 재개

6)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의 약어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간의 북미자유무역협정

7)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약어로 TPP 참여국 중 미국을 제외한 11개 국가가 정식서명 후 발효 추진 중인 협정

8) Trade in Services Agreement의 약어로 우리나라, 미국, EU 등 23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서비스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면, 미국은 다양한 통상협상에서도 무역장벽보고서에 기술한 내용(특히 디지털무역 관련) 위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갈 공산이 크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역시 미국의 무역장벽보고서에 제시된 사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 ICT 분야 정책이 무역장벽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미국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https://ustr.gov/>).

박은지 (2017), “USTR NTE 보고서 상 ICT 무역장벽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고찰”, 《KISTEP InI》, Vol.1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pp. 56-65.

이종원 외 (2017), 『Mega FTA 시대의 신유형 서비스(스마트미디어, 광고 등) 규범체계 및 스마트미디어 콘텐츠 규제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17-1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USTR,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2014-2018.